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9. 27 선고 2017가단22011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등]

전 문

원고아뮤티 유한회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9. 2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2007. 3. 9.

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평택시 C 대 121m²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.

3. 제1의 나.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피고 D, E, F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).
2. 무변론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최진숙

별지